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 
조례안
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9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25.

기획재경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강한곤 의원 등 6명(장호섭, 황국주, 이선주, 도하석, 박정환)
- 발의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검토기간: 2024. 9. 12.(목) ~ 9. 20.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기존의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골목형상점가 지정, 지정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
(안 제3조 ~ 제5조)
-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,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9. 12. ~ 9. 23.)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조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
  - 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고, 안 제4조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구역에 상인조직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은 25개 이상, 상업외 지역은 20개 이상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,
  -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정·변경 신청, 지정 취소,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  -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.

- 부칙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중 골목형 상점가 관련 규정을 삭제 하였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각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,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약칭 : 전통시장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3. “상인조직”이란 전통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·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·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# 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【현행조례】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.
2. “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.
4. “상인조직”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.
5. “상인회”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.
6. “시장관리자”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.
7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·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8. “경영현대화”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, 공동사업, 판로촉진과 홍보,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.
9. “편의시설”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, 비 가리개, 도로, 화장실, 전기·소방·가스·상하수도 및 냉·난방시설, 고객지원센터, 콜센터 등 물류시설,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.
10. “청년상인 육성사업”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제11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)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, 영 및 규칙의 전통시장 인정·취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